

2021년도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6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56건(안건번호 제2021-33388호~3348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33388호(순번 1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 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3389호~33393호(순번 2번~6번)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3394호~33400호(순번 7번~13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3401호(순번 14번)는 시정권고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심의요청 시점에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불법복제물의 존재가 확인된 점,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공유 기능을 이용한 공유가 아닌 점,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보호원의 시정권고 기준에 비추어 예외적인 사유

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33483호~33484호(순번 96번~97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42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6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4쪽, 5쪽의 블로그 게시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A,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는 블로그 게시물명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고, 정보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9쪽~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C, B,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5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 ☆☆☆☆☆☆☆’ 16화 자막 파일(smi)과 해당 애니메이션의 스크린샷, 게시자 작성 리뷰를 함께 게시한 사안임. 총 1개의 게시물임.

해당 저작물은 일본 NHK에서 2020. 12. 6.부터 2021. 3. 29.까지, 우리나라 애니플러스에서 2020. 12. 7.부터 2021. 3. 29.까지 방영하였음. 넷플릭스, 왓챠 등 OTT 플랫폼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6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티스토리과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들이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각각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16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티스토리에 해당 저작물의 967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네이버 블로그에서 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12화까지 총 12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B, D 위원: 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 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13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방송물을 50 포인트 내지 9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7개의 게시물임.

(순번 7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2021. 3. 27.에 방영한 1254회를 7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방송 전체분량인 1시간 5분 14초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2021. 3. 27.에 방영한 86회를 7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방송 전체분량인 1시간 6분 2초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B, D 위원: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1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 번은 시정권고를 받은 실명의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건임. ☆☆☆☆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 ☆☆' ☆☆☆화를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할 경우, 처음 심의한 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여, 해당 안건은 제3분과위원회에 배정되었음. 민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 16쪽~17쪽에 정리해 두었음.

(민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참고자료를 보여주면서)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라서 ☆☆☆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후 현재 블로그가 차단되어, 해당 블로그 차단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접속하면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제2021-52회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 ☆☆☆☆ ☆☆ ☆☆ ☆☆”라는 제목으로 2014. 9. 4.에 게시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의 ☆☆☆화를 '12분 51초', '11분 49초'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각각 스트리밍으로 전송하고 있음.

2021. 3. 22.에 개최한 제2021-52회 제1분과위원회는 ☆☆☆☆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보기” 기능 이외에 공유나 다른 기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타인이 게시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영상 게시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공유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가 게시된 URL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민원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를 근거로 영상의 공유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민원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상담사례는 유튜브 동영상의 공유 기능에 관한 것으로, 링크 공유에 대한 우리 법원의 원칙적 입장 및 유튜브 이용약관에 의하여 허용되는 임베디드 링크,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됨을 경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다만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상담사례는 유튜브 동영상이 유튜브버의 저작물, 즉 합법적인 저작물일 때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를 해당 상담사례에 대입하여 보아도 마지막 경우인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유튜브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에 대응하는 사례로서 ‘☆☆☆ ☆☆’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OSP가 직접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되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서비스내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게시(임베디드 링크)한 안전에 대하여 이를 직접링크 게시물과 달리 링크 게시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판단 없이 시정권고를 의결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의 동영상을 단순히 공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간단히 검토함.

보호원의 채증자료 및 민원인 제출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동영상은 직접 ☆☆☆서버에 등록한 자가 따로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이 게시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해당 플레이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게시물 하단에 “☆☆☆ ☆☆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법복제물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카테고리명은 “☆☆☆ ☆☆☆☆☆☆☆☆☆☆☆☆☆”로, 게시자가 다량의 불법복제물을 본인의 관리하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고 볼 정황 또한 충분함. 본 건에서 불법복제물을 ☆☆☆☆☆ 서버에 업로드한 사람과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 및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으로 보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 및 시정권고 업무처리의 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비추어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제2021-52회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와 민원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2021-52회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 민원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확인함)
- A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게시물에 불법복제물과 게시자가

- 오진해 전문위원: 소제기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하듯이, 첫 번째로 '나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영상을 올린 적은 없다', 두 번째로 '영상을 올린 적은 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미 정지를 하여 재생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요소가 없다', 세 번째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였지만, 블로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이다'라는 순서대로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음.
- D 위원: 보호원 제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음.
- B 위원: 시정권고를 받은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건으로서, 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 및 시정권고 업무처리의 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비추어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심의요청 시점에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불법복제물의 존재가 확인된 점,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공유 기능을 이용한 공유가 아닌 점,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보호원의 시정권고 기준에 비추어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블로그 내 일본 애니메이션을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종전대로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C 위원: 제2021-52회 심의대상 게시물의 채증 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의 존재가 확인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5번~9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42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종이의 집'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종이의 집'을 56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종이의 집 시즌2 1화~9화의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스페인 Antena 3에서 2017. 10. 16. ~ 11. 23. 방영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뽕숭아학당'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뽕숭아학당'을 1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1. 3. 24.에 방영한 44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TV조선에서 2020. 5. 13.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1,650원 구매 가능함,
(방송 '마우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9번은 웹하드 사

이트에서 방송 '마우스'를 6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1. 3. 31.에 방영한 9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3. 3.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2,200원 대여 가능함.

(순번 96번~97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6번~9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순번 94번~95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94번~95번과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C, A, D 위원: 순번 96번~97번은 부결하고, 순번 15번~95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6번~97번은 부결하고, 순번 15번~9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3483호~33484호(순번96번~97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33388호~33482호(순번 1번~9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1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